

# 일본의 농약 안전사용 현황 ①

안전성 확보위한 사용지도에 주력  
정부·현시정촌·민간단체 역할분담  
86부터 농약관리지도사 제도 실시



일본농약공업회  
전문이사 佐佐木 亨

## 4. 농약의 안전사용법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농약의 안전사용을 지키기 위하여는 가능한한 시험성적을 모아 평가한 것을 사용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고만다. 따라서 농약취체법에서는 용기(容器)에 필요한 사항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지도는 정부, 현시정촌(縣市町村)을 비롯하여 민간단체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표 3).

### 1) 정부조직(政府組織)

정부조직의 중심은 농림수산성 농잠원에국 식물방역과(農林水産省農

蠶園藝局植物防疫課)이고 농약대책실(農藥對策室)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요업무는 농약관리·생산·유통·소비개선·조정, 농약검사소(農藥檢査所)에 관한 일, 농업자재심의회에 관한 일 등으로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전국 7개 지방농정국(地方農政局)에서는 현(縣)을 지도하고 있다.

### 2) 현조직(縣組織)

현에서는 농림부(또는 농무부, 농정부 등)가 소관하고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기관으로서 「병해충방제소」가 있다. 현재 1현 1병해충 방제소로 정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방제소의 업무는 식물방역법에 정해져 있는데, 현에 있어서의 방

제행정과 기술센터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실제의 방제에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정부는 농약안전사용대책을 포함하여 「병해충방제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조성,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약 1만명...농약안전사용지도

「병해충방제원」은 현의 임시직원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시정촌(市町村)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농약안전사용을 비롯하여 병해충방제소의 지시 및 시정촌과의 밀접한 연락아래 전국적으로 약 10,000명 정도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현방제협의회(縣防除協議會)」는 정부의 「농작물 유해동식물 방제실시요강」에 따라 현지사가 농업단체, 농약관계단체로 구성하는 조직이며, 현의 농약안전사용을 포함한 방제실시지침 작성에 관여하게 된다.

「시정촌협의회(市町村協議會)」도 시정촌장과 시정촌농업단체, 농약관계단체, 농업개량보급원, 병해충방제원, 방제조합의 책임자로 구성되며 시정촌의 농약안전사용과 방제실시계획 작성에 관여하게 된다.

### 3) 민간조직(民間組織)

농약공업회, 일본식물방역협회, 일본식물조절제연구협회, 농림수산항공

협회, 진류농약연구소 등도 각각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독자적인 농약안전사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가. 농약공업회

농약공업회는 안전대책으로서 농약의 유통대책을 국제협력과 같은 중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데, '87년도의 중점활동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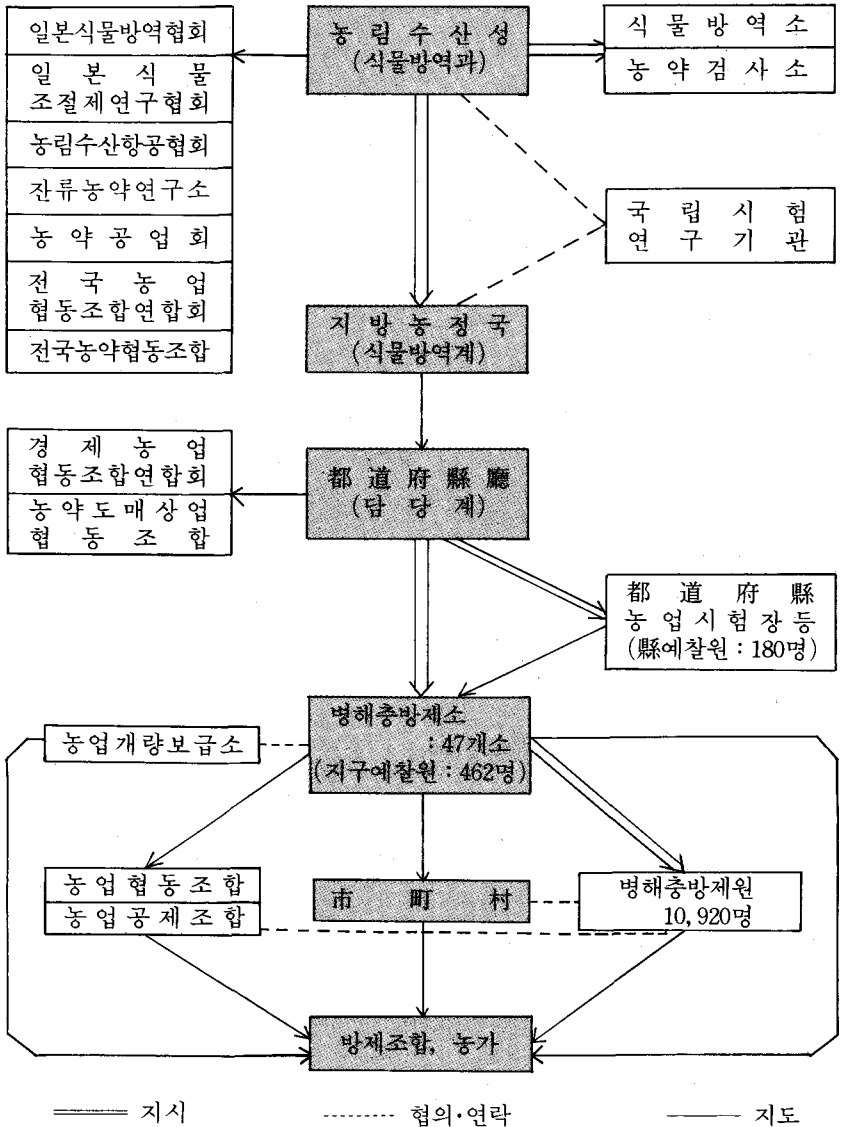
#### ① 「음식물과 농약」

일반소비자들에게 농약이 왜 필요한지, 음식물에 걱정이 없는지 등의 의문을 알기쉽게 해설한 소책자 「음식물과 농약」을 제작하여 현과 농약유통단체의 협조를 얻어 배포하고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도록 했다.

#### ② 응급처치법의 보급

농약살포중의 사고는 안전사용 홍보성과에 힘입어 감소경향이지만 자살이나 타살 등의 농약의 목적의 사용에 따른 사고는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만일 불행하게도 중독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농약중독증상과 치료법」 책자와 「차트」를 만들어 사고자의 진단과 치료시에 전문의(專門醫)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통해 배포했다.

또 농약중독 정보수집대책의 일환으로 신규등록약제를 대상으로 중독정보카드를 작성, '86년에 설립된 일



<표 3> 식물방역조직의 개요(1987)

본중독정보센터에 제공하고 있다.

③ 「농약의 판매·방제업자 지침」

농약취체법에 따라 농약판매업자, 방제업자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1984년 현재 농약 판매업자가 66,608명, 방제업자가 18,904명이 등록되어 있다(기타 제조업자 210명, 수입업자 23명). 이들 업자는 농약을 사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므로 농약안전사용법 보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농약의 판매·방제업자 지침」을 작성하여 현 등을 통한 이용추진을 꾀하고 있다.

④ 「농약안전사용」 라디오 방송

농림방송사업단(農林放送事業團)에서 5월에서 8월까지 「농약안전사용메모」(라디오 단파)를 방송하여 농가에 대하여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⑤ 「농약안전사용을 위하여」

회원의 협력을 얻어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 보급원을 대상으로 VTR「농약안전사용을 위하여」를 제작했다.

⑥ 용기표시의 개선

농약안전사용대책의 일환으로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우선 라벨을 잘 읽어보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부 관계자로부터 글씨가 작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농약용기 표시 요령」을 개정했다.

새 요령은 종래의 라벨보다 보기

가 쉽고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하게 해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글씨의 크기, 글씨체, 행간(行間)등을 정해둔 외에 중요한 주의사항은 크게 표시해 두었다.

## 나. 농약위해 방지운동

농림수산성, 후생성 및 현이 주최하고 관계단체가 협력하여 6월부터 1개월씩 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정부차원에서는, ①홍보기관 등에 의한 계몽 ②특정현 지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구, 무등록 농약의 불법판매지구를 관할하는 현(15개)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③인쇄물의 제작·배포.

현차원에서는, ①위해방지 대책에 관한 검토 ②홍보기관 등에 의한 계몽선전 ③학생에 대한 위해방지운동 보급 ④강습회 등의 개최 ⑤의료기관과의 공동 제휴(사고자의 처치체제, 사고의 파악) ⑥살포작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⑦환경위해 방지대책 등이다.

## 다. 농약관리지도사

농림수산성은 현을 통하여 농약관매업자, 농약방제업자에 대한 농약에 관한 올바른 지식, 안전대책 등의 수준높은 연수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농약관리지도사로 인정하게 되었다('86

부터 실시중).

농약연수는 지금까지 유통단체, 일부 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했다. 실제연수, 인정사업은 현지사가 행하고 농약관리지도사의 인정기간은 3년이고, 재연수를 받으면 그 자격은 갱신된다. 본 제도가 정착되면 농약의 안전성확보라는 시점에서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관리지도사가 설치한 사업소에서만 다루는 방법 등도 고려중이다.

### 올바른 사용만이 안전성 보장

농약에 관한 각종 시험성적에서 안

전성을 평가하여 사용방법이 정해지지만 이것은 농약사용자가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 업계·관계·학계에서의 안전한 농약의 연구개발을 위한 접근도 아주 중요하며 앞으로 농약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자설계기술, Biotechnology에 의한 기술개발 등의 진전도 기대된다.

농약의 안전사용문제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과제이며 특히 인접한 3국의 상호정보교류는 아주 뜻이 깊다.

일본의 현재상황이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다.

